중소기업 제품화 개발사업

1. 사업개요

□ '중소기업 제품화기술개발사업'은

○ 중소기업청에서 시행하는 '기술개발지원사업'을 통해 개발한 신기술과 시제품을 제품화하기 위해,

○ 중소기업청과 창업투자회사·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공동으로 투자하여 담보와 이자없이 자금을 지원하고,

○ 제품화에 성공하면 매출금액의 일정비율을 기술료로 돌려받는 사업

2. 신청 및 참여자격

□ 중소기업

○ 2006.1.1 이후 중소기업청에서 시행한 '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' 또는 '기업협동형 기술개발사업' 개발과제를 수행하여 **'성공'** 등급 판정을 받은 중소기업

□ 투자기관

○ 「중소기업창업지원법」 제10조에 따라 중소기업청에 등록한 창업투자회사

○ 「여신전문금융업법」 제3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신기술사업금융업자

* 투자기관 관련 문의처 : 한국벤처캐피탈협회(02-2156-2103~4)

3. 지원방식

□ 중소기업이 제안한 '제품개발 과제'에 대해 정부, 투자기관,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매칭하여 **프로젝트 투자***하는 방식

* 프로젝트 투자란 : 특정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계약을 통해 소요자금을 지원한 후 그로부터 얻는 수익을 분배하는 형태의 투자

□ 투자비율은 정부 50%, 투자기관 30%, 중소기업 20%

4 지원내용

□ 지원규모 : 100억원 (15개 과제)

□ 지원한도

○ 정부출연금은 총사업비의 50%범위에서, 최대 7.5억원까지 지원

□ 사업비 투자 및 부담 기준

○ 투자기관은 총사업비의 30%이상 현금으로 투자

○ 중소기업은 총사업비의 20%이상 현금 또는 현물로 부담

* 기업부담금의 20%이상은 현금부담

□ 지원분야

○ 신기술·시제품 개발 완료 후 업그레이드, 목형·금형, 생산공정 설계, 성능·실험 개선, 전문가 활용, 디자인 및 기술인력 등 제품화에 필요한 자금

○ 다만, 제품생산에 필요한 제조설비 도입, 마케팅 비용 등은 지원분야에 해당하지 않음

5. 투자조건 (기술료회수)

□ 기술료 산정의 근거가 되는 '매출액'은 아래의 3가지 기준으로 판단

< 매출 판단기준 허용 유형 및 상한선 >

구분	징수 기준	기술료율 상한	회수기간 상한	시작시점
1	기업 총매출액	10% 이내	5년 이내	개발종료 후, 1년 단위
2	기업 총매출액 증가액	15% 이내	7년 이내	개발종료 후, 1년 단위
3	해당제품 총매출액*	20% 이내	7년 이내	해당제품 매출발생시, 1년단위

* 해당제품의 객관적 매출액산정을 위해, SPC(특수목적법인)설립가능

○ 징수기준, 기술료율, 회수기간 등에 대해서는 중소기업과의 투자계약을 통해, 허용된 상한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설정

○ 협의된 기술료율이 다르더라도, 기술료 납부 상한액은 정부와 투자기관의 투자금 합계의 250%이하로 제한하며, 투자수익율의 상한은 정부는 100%, 투자기관은 500%로 제한

* 회수된 기술료는 정부(25%), 투자기관(75%)의 비율로 배분

6. 신청 및 지원제외

□ **신청제한**

※ 신청제한에 해당할 경우, 신청 전에 제한 사유를 해소해야 신청 가능하고, 신청 이후라도 최종협약 이전에 신청제한 사유가 발생 또는 발견되는 경우 평가·지원 제외대상에 해당

① 중소기업, 대표자, 과제책임자 등이 중소기업청 기술개발사업에 정산·환수금 미납, 기술료 미납, 보고서 미제출 등 **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**

② 중소기업, 대표자, 과제책임자 등이 중소기업청 기술개발사업에 **참여제한 중인 경우**

③ 중소기업청 기술개발사업에 중소기업이 **2개 과제 이상 주관기관**(공동개발기업 포함)**으로 동시에 참여**하고 있는 경우(접수 마감일 기준, 단 잔여기간 6개월 미만은 제외)

□ **평가·지원제외**

※ 평가·지원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, 선정된 이후라도 협약이전에 해당사실이 발생 또는 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

① 신청 및 참여자격이 맞지 않거나, 신청과제의 내용이 사업목적, 개발특성,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

② 신청과제가 신기술, 시제품 개발완료 후 제품화 개발이 진행 중 이거나 완료된 경우

③ 중소기업, 대표자 및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
i) 기업의 부도, 휴·폐업

ii)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

iii) 부채비율이 1,000%이상인 경우

iv) 기업이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

* 가장 최근에 확정된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하되, 공신력 있는 기관이 확인한 추정 재무제표를 제출할 경우 판단근거로 인정

7. 사업절차 및 일정

□ 사업절차



□ 사업일정

① **사업설명회('09.7.9 ~ 7.17)**

- 중소기업 및 투자기관 대상 설명회 개최
- 사업내용 및 참여방법, 투자유치 요령 및 절차 등 설명

② **투자심사신청('09.8.3 ~ 8.14)**

-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운영기관에게 투자심사 신청서를 제출하여 투자심사 후보기업으로 등록

③ **투자설명회('09.8.24 ~ 9.4)**

- 투자심사 후보기업이 투자기관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개최
- 운영기관이 주관하여 합동으로 개최할 예정이며, 신청기업이 투자기관에 직접 투자설명 가능

④ **투자심사 및 투자의향서 체결('09.9.7 ~ 9.25)**

- 투자설명회 등을 마친 투자심사 후보기업에 대해 투자기관이 투자심사를 한 후 투자의향서를 체결

* 투자심사 후보기업이 아닌 중소기업 또는 투자심사신청 이후 투자설명회에 참여하지 않은 중소기업은 별도로 투자기관과 투자의향서 체결가능

⑤ **과제신청('09.9.28 ~ 10.9)**

- 투자의향서를 체결한 중소기업은 사업계획서와 투자기관이 작성한 투자계획서를 관리기관에게 제출

⑥ **기술성·사업성평가('09.10.19 ~ 10.23)**

- 전문기관에서 분야별 산·학·연 전문가 6인 내외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술개발, 제품화 계획, 사업비 산정 및 투자계획의 적절성과 합리성 등을 평가

⑦ **최종선정 (10월말)**

- 종합점수 우선순위 및 과제 수행능력, 지원예산 등을 고려하여, 중소기업청 심의조정위원회에서 최종 지원대상 확정

⑧ **협약 및 정부출연금 지급 (11월 ~ 12월)**

- 최종 선정된 기업에 대하여 협약 체결
- 협약체결 완료 기업에게 투자기관 투자금과 정부출연금 지급

8. 사업체계

구별	기 관 명	주요업무
총괄	중소기업청	○ 사업계획수립 및 공고 ○ 심의조정위원회 구성·운영
관리기관	지방중소기업청	○ 신청 서류접수(사업계획서, 투자계획서) ○ 선정결과 통보 ○ 진도점검 및 최종점검 등 사후관리
전문기관	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	○ 기술성·사업성평가 위원회 운영 ○ 협약체결, 정부매칭금액 투자, 사후관리
투자기관	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	○ 투자프로젝트 발굴 및 투자계획수립 ○ 기술료 징수 및 분배
운영기관	한국벤처캐피탈협회	○ 투자심사, 기업설명회(IR)의 운영 및 관리 ○ 투자관련 관리업무
주관기관	중소기업	○ 개발과제 수행 및 관리 ○ 기술료 납부

9.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

□ **투자심사신청 방법** : 온라인(인터넷)을 통한 투자심사신청서 접수

○ 투자심사신청서 접수 : http://rnd.kvca.or.kr → 온라인 신청·접수

○ **신청기간 : '09. 8. 3(월) ~ 8. 14(금) 24:00까지**

□ **과제신청 방법** : 해당 지방중소기업청에 중소기업이 직접 제출

○ **신청기간 : '09. 9. 28(월) ~ '09.10.9(금)**

○ **제출서류 : 사업계획서 및 투자계획서 제출**

- 사업계획서 : 중소기업 작성 / 투자계획서 : 투자기관 작성
(중소기업 제품화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 별지서식)

10. 공지사항

○ 투자심사신청서, 사업계획서, 투자계획서 등 신청에 필요한 서식은 '09. 7. 8(수)부터 인터넷 홈페이지(홈페이지 주소 : http://rnd.kvca.or.kr → '자료실')에서 내려받을 수 있음

○ 중소기업 제품화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은 '09.7.15(수)부터 인터넷 홈페이지(홈페이지 주소 : http://www.smba.go.kr → '정책마당' → '기술지원', http://rnd.kvca.or.kr→ '자료실')에서 내려받을 수 있음

○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내용은 중소기업 제품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에 따름

11. 문의처 및 접수처

기 관 명		전 화	주 소
관리기관	서울지방중소기업청	02-509-6772	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 (중앙동 2번지)
	부산·울산지방중소기업청	051-601-5149	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업도로 100 (송정동 1633-1)
	대구·경북지방중소기업청	053-659-2288	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4차첨단로 (월암동 1111)
	광주·전남지방중소기업청	062-360-9158	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서구청 2길 (300번지)
	경기지방중소기업청	031-201-6975	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공원길 66
	인천지방중소기업청	032-450-1156	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 34 (논현동 445-1 30B-1L)
	대전·충남지방중소기업청	042-865-6157	대전광역시 유성구 신성로 70 (장동 23-3)
	강원지방중소기업청	033-260-1631	강원도 춘천시 안마산로 110
	충북지방중소기업청	043-230-5333	충북 청원군 오창읍 양청리 803-1
	전북지방중소기업청	063-210-6443	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2가1241-5
	경남지방중소기업청	055-268-2555	경남 창원시 중앙로 134(신월동100-3)
	제주특별자치도(기업사랑과)	064-710-2636	제주도 제주시 문연로 2(연동)
전문기관	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	02-3787-0431	서울시 영등포구 은행길 64(15-24) 익스콘벤터 3F(150-969)
운영기관	한국벤처캐피탈협회 (R&D사업화투자협의회)	02-2156-2103 ~4	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3길 14-1 401호 (서초동 1706-5)

12. 사업설명회 일정

일시	지역	장 소
'09.7.9(목), 14:00	부산・울산	부산·울산지방중소기업청 대강당
	대구・경북	대구·경북지방중소기업청 3층 강당
'09.7.10(금), 14:00	서울	서울지방중소기업청 대강당
	충북	충북지방중소기업청 대강당
	강원	강원지방중소기업청 대강당
'09.7.13(월), 14:00	대전・충남	대전·충남지방중소기업청 대강당
	경기	경기지방중소기업청 대강당
'09.7.14(화), 14:00	광주・전남	광주·전남지방중소기업청 대강당
'09.7.15(수), 14:00	경남	경남지방중소기업청 대강당
	전북	전북지방중소기업청 대강당
'09.7.16(목), 14:00	인천	인천 송도 라마다 호텔

* 인천지역은 인천지방중기청에서 실시하는 삼목장터 행사와 병행하여 추진